



동아특수화학(주)

분쟁광물 금지 정책

승인자	서무 이한경 차장
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최초 제정
문서 관리 번호	DGP-0215
문서 관리자	서무 이한경 차장

제 1조 [목적]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광물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조/납품받는 제품에 분쟁지역내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 2조 [분쟁지역 및 분쟁광물]

1.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2.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4종 - 주석(TIN) / 텅스텐(W) / 탄탈륨(TA) / 금(AU)

제 3조 [규제 내용]

콩고공화국 및 인접국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 후 이를 통해 내전 자금 확보 및 광물 채취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상장사 및 상장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Homepage : http://ntb.kita.net/conflict/cope_is.screen?menuid=ntb030101)

제 4조 [분쟁광물 관련 정책 및 대응책]

1. 당사는 상기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 관련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분쟁광물 관련 CFS-FREE 인증된 제련소의 광물 만을 사용한다.

(관련 Homepage : <http://www.conflictreesourcing.org/conflict-free-smelter-refiner-lists/>)

3. 당사에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관련업체의 경우 CMRT의 제공을 통해 사용 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MRT :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4. 미국, EU 등에서는 테러, 마약, 인권유린 등의 이슈가 있는 대상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속한 국가, 기업, 기관, 개인과 관련된 거래의 이해 당사자에게 각종 경제/무역 제재 등을 가하고 있다.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하위 공급망에 해당 제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다.

2025. 12. 19

2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2025 년 12 월 19 일

동아특수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병철